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원 신규채용 심사 지침

제정 2004. 4. 19.
개정 2008. 8. 20.
개정 2010. 2. 10.
개정 2011. 3. 17.
개정 2019. 10. 30.
개정 2023. 0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과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제2조(심사영역 및 평가비중)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 및 평가비중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 10. 30.>

1. 기초 및 전공심사 70%
 - 가.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 나. 연구실적 35%
 - 다. 총괄연구업적 35%
2. 면접심사 20%
 - 가. 공개발표(국제화능력 포함) 10%
 - 나.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 10%
3. 임용 적합성 10%

제3조(연구실적물)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인정점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의 4를 따르되, 동조 제1항제6호 중 박사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개정 2019. 10. 30.>

②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온라인 선공개 또는 온라인 전용 출판 연구실적물도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개정 2023. 8. 24.>

③ 연구실적물 중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예정증명서를 첨부한 논저는 해당 건에 대한 경영(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출판되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온라인 선공개 또는 온라인 전용 출판 연구실적물은 DOI 부여 시점을 출판 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9. 10. 30.> <개정 2023. 8. 24.>

④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100점 이상 3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3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1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평가 평

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9. 10. 30.> <개정 2023. 8. 24.>

제4조(기초 및 전공심사 연구실적 심사) ① 학장은 학과장으로부터 5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학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5명의 연구실적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9. 10. 30.>

② 연구실적심사위원은 학장이 심사 의뢰한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연구실적심사위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9. 10. 30.>

제4조의 2(기초 및 전공심사 총괄연구업적심사) ① 총괄연구업적심사는 학과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지명한 본교 3명의 교원과 학장, 교무부학장이 심사위원이 되며, 학장이 지명하는 심사위원은 연구실적 심사위원과 총괄연구업적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② 총괄연구업적 심사위원은 학장이 심사 의뢰한 총괄연구업적을 심사하고 총괄연구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9. 10. 30.>

③ 총괄연구업적심사는 연구업적의 총 편수와 게재학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개정 2019. 10. 30.>

제5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 대상자는 학장이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상위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정한다. <개정 2019. 10. 30.>

② 학장은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공개발표,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9. 10. 30.>

③ 심사위원은 공개발표,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고 공개발표평가표,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9. 10. 30.>

④ 공개발표는 강의내용, 강의전달능력, 국제화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심사는 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중 최고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개정 2019. 10. 30.>

제6조(최종평가) ① 학과장은 교원임용후보자조서, 총괄연구업적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를 기초로 하여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9. 10. 30.>

② 학장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확인하고 교원임용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 10. 30.>

③ 교원임용심사보고서는 심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되 교원임용후보자조서에서 적격하다고 평가된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공채심사종합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9. 10. 30.>

제7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점 만점으로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19. 10. 30.>

평가항목	모집분야와의 합당성	연구실적	교육능력	교수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 등
배점	2.5	2.5	2.5	2.5

② 공채심사종합평가결과 90점 이상 득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 추천한다.

③ 임용 추천되는 후보자의 임용추천 직급과 계약기간을 결정한다.

부칙<2019. 10.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24.>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